2026년도 제17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6. 6. 24. 수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김종원, 김춘식, 이용민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6-16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박현주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심의
- 제3호: 접속차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80건(안건번호 제2026-108131호~10851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6-108131호~108162호(순번 1번~32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안으로, 해외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며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6-108163호~108164호(순번 33번~34번)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고 분량도 원저작물 전체를 게시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6-108165호~108510호(순번 35번~380번)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함.

o 제2호: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심의

-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54개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 여부(안건번호 제2026-427호~480호)

- 회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긴급차단을 명령한 54개 사이트에 대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접속차단 조치를 가결함.

o 제3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접속차단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권고 5건(안건번호 제2026-166호~17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6-166호~170호(순번 1번~5번)에 대해 접속차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김춘식 분과위원장 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제17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6-16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춘식 분과위원장 대행: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의견 없음.

- 박현주 전문위원: 시정권고 안건 회의록 중에서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이나 저작권자 등은 비식별 처리하도록 하겠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김춘식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권자 등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춘식 분과위원장 대행: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1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523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3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커뮤니티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인 '♤♤♤'로 연결되는 링크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안 총 32건, 38개 게시물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32번은 '◎◎◎◎◎◎'에서 '♤♤♤'로 연결되는 링크모음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로 직접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는 게시물들로, 모두 3가지 유형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검토보고서에 설명된 바와 같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제공하는 링크를 통하여 접속되는 '♤♤♤' 사이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긴급차단 명령에 따라 접속이 차단된 바 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들이고, 현재 위 사이트에서 이용 중인 URL은 접속차단 조치 이후 생성 또는 이용되고 있는 대체 URL 주소로 추정됨. 심의대상 게시물이 제공 중인 URL은 2026. 6. 15. 또는 6. 18.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긴급차

단 명령에 따라 접속차단 조치된 바 있음.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하여, 대법원은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 또한 이에 앞선 하급심 판결에서는 해외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저작물에 대한 실질적 접근 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 우리 심의위원회 또한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의 민·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경유사이트에 다수의 광고가 존재하고 대표적인 저작권침해 해외사이트들로 최종 연결시키는 것으로 불법복제물로의 접근가능성을 증대시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판단할 수 있음. 또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회피할 수 있는 대체사이트의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특정 시점의 URL에 대한 차단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 정보성을 유지한다고 할 것임.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되도록 원천게시물에 직접 시정권고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국내 온라인서비스에 소재하는바 이에 대하여 시정권고함으로써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김춘식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순번 1번~32번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김춘식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번~3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3번~34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동일 게시자가 커뮤니티 사이트인 '◎◎◎◎◎◎' 갤러리에 일본 미번역 만화를 번역하여 게시한 사안 총 2건, 2개 게시물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3번은 '■■)■■■ ■■■■'라는 제목의 글로 일본 만화의 한 화를 번역한 만화 10페이지에 상당하는 이미지를 게시하였으며 게시자가 작성한 내용 혹은 창작성이 있는 내용은 게시되어 있지 않음. 해당 회차는 일본에서 2026. 3. 28 공개된 최신화로, 국내에서는 미발매된 회차임. 순번 34번 역시 '○○) ○○○○○ ○○ ○○○○'라는 제목의 글로 일본 만화의 한 화를 번역한 만화 19페이지에 상당하는 이미지를 게시하였으며 게시자가 작성한 내용 혹은 창작성이 있는 내용은 게시되어 있지 않음. 해당 회차는 일본에서 2026년 5월에 공개된 최신화로, 국내에서는 미발매된 회차임. 심의대상 게시물

들은 국내 미번역된 만화 저작물의 번역본을 감상이나 설명 없이 그대로 게시하고 있음. 또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감상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국내 미발간된 만화저작물 한 화의 전체 분량을 복제하여 전송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별도 이용허락이 없는 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만화의 대사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전송하는 행위는 원저작물 중 어문저작물 부분을 2차적저작물로 작성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는 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만화를 복제한 이미지 외에 게시자가 작성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복제·전송한 분량이 상당함. 위와 같은 점 및 심의대상 게시물이 원저작물의 합법 또는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 심의 사례는 검토보고서 참조 바람.

- 김춘식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순번 33번~34번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람.

- A 위원: 앞선 안건도 그렇고 해당 안건 모두 '◎◎◎◎◎◎'에 게시된 게시물들임. 이렇게 불법복제물이 많이 업로드되는 사이트라면 주무부처와 협의해서 특별 단속 대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함.

- 박현주 전문위원: '◎◎◎◎◎◎'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불법복제물이 올라오는 OSP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적이 있으나, 특사경 입장에서 수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음. '♤♤♤'와 비교해 보면, '◎◎◎◎◎◎'는 개설 취지가 상당히 다름. '◎◎◎◎◎◎'에는 엄청나게 많은 게시판들이 있어서 이용자들이 다양한 게시물을 올리는데 일부 불법복제물이 있

는 것이고, '♤♤♤'나 '♣♣♣♣' 이런 사이트들은 아예 불법복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것을 목적으로 개설한 것임.

- A 위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나쁘지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사람도 상당히 나쁘다는 생각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서 정화에 노력해야 된다는 의견임.

- 김춘식 분과위원장 대행: 더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김춘식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33번~3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5번~38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 총 346건, 483개 게시물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영화 '노트북 The Notebook'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

서)순번 39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노트북 The Notebook'을 판매 중인 사안임. 최근 재개봉하여 현재 극장 상영 중인 영화의 전체 분량을 바로보기 및 다운로드로 판매 중임.

(방송 '스트릿 레스토랑 파이터'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8번은 웹하드에서 방송 '스트릿 레스토랑 파이터'를 판매 중인 사안임. 2026. 6. 21.부터 tvN에서 방영 중인 최신 예능 프로그램의 첫 화 전체분량을 바로보기 및 다운로드로 제공 중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등을 웹하드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사안으로 시정권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김춘식 분과위원장 대행: 순번 35번~380번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김춘식 분과위원장 대행: 순번 35번~380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6-108131호~108510호(순번 1번~380번)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심의

- 김춘식 분과위원장 대행: 2호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박현주 전문위원: 이번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법 제133조의4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한 후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통지하였기에 심의를 진행하는 안건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차단 명령 조치를 시행한 사이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아래 54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33조의4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 후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통지하였음.
  (긴급차단 조치 사이트 안건 요약표를 제시하면서) 상정된 안건인 54개 사이트 주요 정보는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전송되는 복제물, 정보 또는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심의 대상 사이트 내에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심의 대상 사이트에 대한 주요 권리자

들의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확인됨. 또한 심의 대상 사이트들은 다수의 불법복제물등을 자체 서버 또는 별도의 저장서버에 저장한 후 게시판, 뷰어, 재생 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이를 조회, 재생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에 대한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불법복제물등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심의 대상 사이트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아울러 심의 대상 사이트들은 차단 등 제재 조치에 대응하여 URL 주소 중 일부 숫자 등을 변경한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아래 54개 사이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제133조의4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하였거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접속차단 시정권고를 한 이후 URL의 숫자 부분 등을 변경하여 재운영되고 있음.

(접속차단 시정명령(긴급차단) 또는 시정권고 사이트 목록을 제시하면서) 해당 목록은 문체부가 긴급차단 명령을 하였거나 보호원이 접속차단 시정권고를 한 사이트이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가결된 사이트임.

채증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나.항과 같은 비교에 의하면 심의대상 사이트는 문체부에서 긴급차단을 명령하였거나 보호원에서 접속차단을 시정권고한 사이트 54개 사이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체사이트로 인정할 수 있는데(이에 관하여는 아래 나.에서 다시 한번 따져봄), 여기에 아래 2)와 같이 주요 권리자들에 대하여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여전히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사이트 전체가

기존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이트 전체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다른 콘텐츠 등 불법복제물에 관련된 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다음은 복제·전송자에게 복제물등의 복제·전송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음.
(주요 권리자들의 이용허락 확인 내역을 제시하면서) 해당 표와 같이 심의대상 안건을 포함한 침해 사이트상 콘텐츠들의 주요 권리자들에게 공문 등으로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았음.
심의대상 사이트의 기재 내용, 콘텐츠 제공 방식 및 이용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함. 따라서 심의대상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의 이용허락 등 정당한 권원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로 판단됨.

저작권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고드리겠음. 해당 사이트들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위와 같이 문체부에서 긴급차단을 최초 명령(2026. 5. 11.)한 34개 사이트 또는 그 후 대체사이트로 인정되어 긴급차단을 명령한 사이트 및 보호원에서 접속차단 시정권고를 한 사이트 중 URL 숫자부분 등을 변경한 대체 사이트들임. 따라서 그 트래픽 양에 비추어 저작권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 지속적으로 URL 숫자부분 등이 업데이트 되고 있어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차단할 필요도 있음.

또한 심의 대상 사이트들은 웹툰, 영화, 드라마 등 상업적 저작물

들을 아무런 권한도 없이 스트리밍 또는 링크나 다운로드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저작권자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가 삭제 통지를 하려고 하여도 통지를 수령할 주소를 사이트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저작권자로서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저작권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접속차단 사이트와 심의대상 사이트의 동일성 확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심의대상 사이트들을 통하여 접속되는 사이트는 문체부의 긴급차단 명령 대상 사이트와 보호원의 접속차단 시정권고 사이트 또는 방미심위의 접속차단 시정요구로 차단된 사이트와 도메인명, 사이트 제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일부 심의대상 사이트의 일부 게시물 정보의 경우 차단된 사이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일부 접속차단 사이트의 경우 별도 안내 페이지·팝업창 등을 통해 현재 또는 향후 대체사이트의 URL을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접속 차단된 사이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됨. 이와 같은 대체사이트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기존 접속차단 효과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다만, 순번 10번~15번은 이미지 파일 호스팅을 위한 도메인으로, 주소를 입력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속이 되지 않아 사이트 접속화면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살펴보기는 힘들지만, 도메인명의 유사성, 도메인 등록정보상 네임서버과 등록자명 등이 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의 대상 도메인 및 그 하위 URL 경로는 불법 웹툰 사이트에 이미지 파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심

의 대상 도메인과 해당 불법 웹툰 사이트는 동일한 운영자 또는 관련자에 의해 등록 및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종합하면 심의대상 사이트 54개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긴급차단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가결 의견임.

- 김춘식 분과위원장 대행: 제2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김춘식 분과위원장 대행: 추가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다면 순번 1번 내지 54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김춘식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긴급차단을 명령한 54개 사이트에 대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접속차단 조치를 가결함.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6-427호~480호(순번 1번~54번)의 접속차단 명령을 가결함.”

o 제3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접속차단 심의

- 김춘식 분과위원장 대행: 제3호 안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박현주 전문위원: 이번 심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5개 사이트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접속차단의 시정을 권고하기 위한 것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함.
(안건 요약표를 제시하면서) 상정된 5개 사이트 주요 정보는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검토보고서를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먼저 접속차단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음. 심의 대상 사이트들은 다수의 불법복제물등을 자체 서버 또는 별도의 저장서버에 저장한 후 게시판, 뷰어, 재생 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이를 조회, 재생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에 대한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불법복제물등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 아울러 심의 대상 사이트들은 차단 등 제재 조치에 대응하여 URL 주소 중 일부 숫자 등을 변경한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심의 대상 사이트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또, 심의 대상 사이트 내에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나, 주요 권리자들의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해당 사이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여부와 관련해서 권리자들의 이용 허락

이 없었음이 확인됨. 심의 대상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내용이거나,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대량의 불법복제물등을 복제·전송하고 있는바, 사이트의 트래픽 양이나 인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고, 대체적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보더라도 해외 서버인 점이나 저작권자가 삭제 통지할 주소할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구제 방법이 별도로 없는 상황이므로 저작권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사안별 검토 내용을 살펴보겠음. 순번 1번~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건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임. 심의 대상 사이트들은 모두 ♠♠♠, ◇◇, ▼▼▼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접속 가능한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임. 심의 대상 사이트의 접속 대상인 사이트들은 이전에 방미심위와 문체부의 긴급차단 명령 등으로 차단되었던 사이트이거나 그 대체사이트임.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하여, 대법원은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 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방조범의 고의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을 인용하여 방조범은 정범이 실행하는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전송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고 판시하였음. 또한 위 판례는 공중송신권 방조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정범의 범죄 실현과의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검토하였는데,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예시로 들면서, 이러한 행위로써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즉, 위 판례는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의 주된 판단 요소로 방조범의 고의와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서 영리적·계속적인 링크 제공이라는 부분은 방조범 성립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 또는 예시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본 사안에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여부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링크 대상인 사이트가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는 등으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정범의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하여 법익 침해를 증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임. 우리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의 민·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심의 대상 사이트가 불법복제물로의 접근가능성을 증대시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법복제물등으로 보아 접속차단의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순번 1번~5번 사이트별 접속 여부, 트래픽 조회수, 배너 광고 게재 여부, 도메인 분석표 등은 검토보고서 기재된 내용 및 시연으로 직접 보여드린 바와 같음. 소결하자면, 순번 1~5번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들로, 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링크의 접속 대상인 사이트들의 불법복제물등 전송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다수의 이용자를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에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행위의 일환으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제13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접속차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김춘식 분과위원장 대행: 제3호 안건 순번 1번~5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순번 3번 사이트의 경우 트래픽 조회수와 도메인 분석표를 봤을 때 개설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 박현주 전문위원: 주소 특성상 그렇게 추측됨.

- B 위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함. 고객편의성을 고려하지 못한 초기 사업자라고 생각됨.

- A 위원: 불법은 시작 초기에 싹을 잘라야 한다는 생각임. 가결에 동의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함.

- 김춘식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번~5번에 대해 대해 접속차단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접속차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6-166호~170호(순번 1번~5번)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권고를 가결함.”

4. 폐회 선언

o 김춘식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17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6년 제17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7. 1.

분과위원장 대행 김춘식

위원 김종원

위원 이용민